

한인 총회 회칙

<주: 본 회칙은 2023년 4월 25일 제 40차 총회에서 최종 수정 통과된 것으로 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C&MA 한인총회라고 부른다. (이하 “한인총회”라고 함.)
(The Korean District Conference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제 2 조 (소재): 한인총회는 그 본부를 감독의 거주지역에 둔다.

제 3 조 (목적): 한인총회는 회원 교회의 발전과 확장 및 국내외 선교를 위하여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제 4 조 (관할): 한인총회의 관할지역은 아래와 같다.

제 1 항 (동부지역): 뉴욕시,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 코네티컷

제 2 항 (동북부지역): 뉴저지, 뉴욕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를 제외한),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햄프셔.

제 3 항 (동남부지역): 펜실베이니아, 매릴랜드, 델라웨어, 워싱턴 디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제 4 항 (중부지역): 노스 다코다, 사우스 다코다, 네브라스카, 캔사스,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미주리, 알칸소, 알라바마, 테네시, 루이지애나, 텍사스, 켄터키, 인디애나,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미시간, 미네소타, 오하이오.

제 5 항 (서부지역): 남가주지역 (베이커스필드카운티 이남),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하와이.

제 6 항 (서중부지역): 북가주 지역 (프레스노카운티 이북), 유타, 콜로라도.

제 7 항 (서북부지역): 워싱턴, 오레곤,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타나, 알래스카.

제 8 항 (기타지역): 기타 미국 외에 한인총회의 사역이 필요한 지역.

제 5 조 (교회 분류): 한인총회에 소속, 혹은 관련된 교회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제 1 항 (조직교회) 등록교인이 성인 20명 이상이며 조직 절차를 마친 교회.

제 2 항 (미조직교회) 한인총회 소속으로 등록교인이 20명이 넘지 않거나, 조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교회.

제 3 항 (준회원교회) 한인총회와 협력 관계를 맺은 교회로, 총회 준회원으로 가입했거나, 미국지방회 혹은 해외 C&MA에 소속된 한인 교회.

제 6 조 (회원): 총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제 1 항 (정회원):

1. 총회에 가입하여 안수목사사역증(OW)을 발부받고, 총회 소속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
2. 총회에 가입하여 Consecrated 공식사역증(COW)을 발부받고, 총회 소속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
3. 총회 소속 조직교회의 담임 전도사.
4. 총회 산하 기관의 대표 목사.
5. 총회 소속 교회의 원로목사 및 은퇴목사
6. 총회 소속으로 C&MA 본부(IM)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

제 2 항 (준회원):

1. 미국지방회나 해외 C&MA 한인교회의 담임목사, 준회원교회 담임목사
2. 총회로부터 안수목사사역증(OW)을 발급받고, 타교단에서, 혹은 독자적으로 사역하는 목사
3. 정회원으로 사역하다가 일시적으로 사역을 중단한 자
4. 총회에 가입하여 선교사사역증을 발부받고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5. 총회로부터 고시전도사 사역증(POW)을 발급받고, 총회 소속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

제 3 항 (이중적): C&MA 한인총회는 실행위원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적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7 조 (정족수): 총회의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총회 조직과 회의

제 8 조 (총회)

제 1 항 (구성): 총회는 아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감독
2. C&MA 본부에서 파송한 대표
3. 교회 파송 대의원
4. 원로목사회에서 파송한 대표 1 인

제 2 항 (대의원 파송):

1. 조직교회는 정회원 교역자 1 인과 평신도 1 인을 총회 대의원으로 파송할 수 있다.
2. 미조직교회는 정회원 교역자 1 인을 총회 대의원으로 파송할 수 있다.

제 3 항 (참관대의원):

1. 준회원교회는 참관대의원을 총회에 파송할 수 있다.
2. 대의원 외에 총회에 참석하여 등록된 정회원과 준회원은 참관대의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3. 참관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그 외 참관인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장의 특별한 허락이 없이는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 4 항 (개회): 총회는 교역자 대의원 과반수와 출석한 평신도 대의원으로 개회한다.

제 5 항 (총회의 업무):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수행한다.

1. 실행위원, 감사 및 공천위원 선출
2.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심의 및 결의
3. 결산 예산 및 사업계획서 심의 및 결의
4. 실행위원회, 상임위원회, 지역회 및 산하기관의 보고를 받고 필요 사항을 심의 및 결의함
5.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결의

제 6 항 (정기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4 월 중에, 각 지역회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일자과 장소는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 감독은 회의 60 일 전에 각 지교회와 각 기관에 총회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각 교회와 산하 기관은 총회대의원 명단을 개회 1 개월 전까지 총회에 접수시켜야 한다.

제 7 항 (임시총회):

1.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감독은 실행위원회의 결의, 혹은 정회원 1/3 이상의 서명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감독의 권위 시에는 서기가 소집한다.
2. 감독은 임시총회 30 일 전에 각 교회와 기관에 임시총회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각 교회와 기관은 임시총회 대의원 명단을 개회 10 일 전까지 감독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4. 임시총회에서는 통보된 안건만을 심의한다.

제 9 조 (감독): 감독은 총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감독은 C&MA 본부의 전임 사역자로, C&MA 헌법에 명시된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제 10 조 (부감독) 부감독(Assistant to the DS)은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의 유고 시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감독은 감독이 추천하여 총회가 인준하며, 부감독의 급여는 실행위원회가 정한다.

제 11 조 (임원)

제 1 항 (서기): 서기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총회 절차를 준비하며,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 항 (부서기):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의 유고시에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항 (회계): 회계는 총회의 재정 출납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예산과 결산을 보고한다.

제 4 항 (부회계):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의 유고시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 (감사): 총회는 목사 1 인과 평신도 1 인의 감사를 선출한다.

제 13 조 (실행위원회)

제 1 항 (구성):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감독, 부감독, 서기, 회계.
2. 각 지역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위원. (총회에서 선출된 지역회 대표 실행위원 궐위시, 해당 지역회는 지역회 내 정회원 목사를 실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요한다.)
3. 감독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은 2 명의 위원.

제 2 항 (직무):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업무 전반의 입안과 감독
2. 총회 재정 결산과 예산안 입안
3. 상임위원회 조직 및 업무 관장
4. 총회 국장 및 직원의 인사
5. 총회의 재산 및 문서 관리
6. 회원의 포상 및 징계.
7. C&MA 본부 및 지교회와의 관계 업무

제 3 항 (소집): 감독은 년 1 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전신 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제 14 조 (상임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업무를 위촉한다.

상임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필요시, 또는 감독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 항 (개척위원회): 개척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 산하 교회 개척 관계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항 (고시안수위원회): 고시 안수위원회는 5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목사고시와 안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항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역자 양성 및 회원들의 연장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항 (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선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항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역자 및 회원 가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항 (홍보위원회): 홍보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 차원의 홍보와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7 항 (회칙위원회): 회칙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회칙과 세칙을 연구 심의한다.

제 8 항 (후생위원회): 후생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친교와 후생업무를 관장한다.

제 15 조 (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 시에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직권위원): 감독은 직권상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17 조 (지역회): 지역회는 총회가 분할한 지역을 관장하여 총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시행세칙 제 2 장에 따라 운영된다.

제 18 조 (영어권사역자회: English Ministries Association): 영어권 사역자회는 회원교회의 모든 영어권 사역자로 구성한다.

제 19 조 (국장): 총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전문 분야에 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국장직의 급여와 임기는 실행위원회가 정한다.

제 20 조 (유급직원): 총회에 사무 및 전문직원이 필요할 때는 감독이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유급 직원을 임명한다.

제 3 장 선거

제 21 조 (감독): 감독의 선출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제 1 항 (후보): 감독은 정회원 목사 중, 공천위원회에서 단수 공천한다. 총회석상에서 후보를 배출하고자 하면, 출석 대의원 10 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후보를 추천한다. 모든 후보는 선거 30 일 전까지 C&MA 본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2 항 (공천위원회): 감독의 임기 만료 1 년 전 총회는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공천위원회는 각 지역회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정회원 목사 3 인으로 구성하며, 공천위원이 된 지역회장은 감독 선출시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공천위원회가 공천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 3 항(선출): 감독은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유효표 중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1 차와 2 차 투표에서 소정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C&MA 본부에서 임시감독을 선정하여 차기 총회까지 시무하게 한다.
- 제 22 조 (임원 및 감사):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하여 유효표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 제 23 조 (지역회장): 지역회장은 시행세칙에 따라 해당 지역회에서 선출한다.
- 제 24 조 (위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 25 조 (임기): 감독의 임기는 4 년이며, 부감독, 실행위원, 상임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제 26 조 (보선): 감독이 궐위된 때에는 National Office 에서 실행위원회와 상의하여 임시 감독을 임명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감독을 선출한다. 새로 선출된 감독의 임기는 C&MA 헌법에 따른다.

제 4 장 교역자

- 제 27 조 (임시당회장): 교회의 담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감독은 즉시 해당 지역회장과 당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모든 교회행정을 지휘 감독케 한다.
- 제 28 조 (원로목사): 한 교회에서 20 년 이상 근속 시무하고 만 60 세 이상이 되어 은퇴하는 담임목사는, 해당 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된다. 교회는 원로목사에게 담임목사 생활비의 1/2 이상을 일생 지불하며 생계를 보조하도록 한다. 추대된 원로목사는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29 조 (은퇴목사): 교회는 담임목사가 65 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은퇴목사로 추대한다. 교회는 은퇴목사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여 덕을 세우도록 한다. 추대된 은퇴목사는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30 조 (정년): 목사는 70 세까지 시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의 내규가 달리 정할 때에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 5 장 조직 및 가입

- 제 31 조 (교회의 조직): 총회 소속의 미조직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감독에게 등록교인 20 인의 명단을 제출한다.
 2. 감독의 입회 하에 조직예배를 드리고 교인총회의 서약을 받는다.
 3. 감독과 교인대표들이 가입서약서에 서명한다.
- 제 32 조 (교회의 가입): 타교단 교회가 총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등록교인이 20 명이 넘는 교회는 조직교회로, 20 명 이하일 때는 미조직교회로 가입한다.
 2. 감독의 입회 하에 가입예배를 드리고 교인총회의 서약을 받는다.
 3. 감독과 교인대표들이 가입서약서에 서명한다.
 4. 교회가 총회에 가입할 때는 담임교역자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담임교역자가 부재한 교회가 가입할 때는 감독의 입회 하에 교인총회에서 가입절차를 밟고 총회 시행세칙에 따라 담임목사를 파송받는다.
- 제 33 조 (교역자의 가입): 교역자가 총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친다.
1. 해당 지역회장의 추천을 받는다.
 2.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3. 감독 및 인사위원회의 면접을 거친다.

제 6 장 재정

제 34 조 (회계년도): 한인총회의 회계년도는 4 월 1 일부터 익년 3 월 31 일로 한다.

제 35 조 (상회비 및 개척선교비)

1. 모든 교회는 매년 전 회기년도의 재정및 교세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한인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매년 전년도 결산액 중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제외한 금액의 2%의 상회비 및 2%의 개척선교비를 총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책정된 상회비와 개척선교비는 12 등분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회원은 실행위원회가 정하는 회비를 매년 총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6 조 (출납): 모든 금전 출납 업무는 감독의 인준 하에 회계와 부회계가 담당하고, 예산에 벗어난 고액의 지출은 사전에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모금): 각 교회와 기관의 모든 대외적 모금 활동은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보험): 교회가 자체 건물을 소유할 경우에는 건물 및 의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39 조 (회계보고): 회계는 매 3 개월마다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감사): 감사는 매년 정기 총회 전, 총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총회 후 교단본부가 요구하는 회계사의 검증을 받아 교단 본부에 제출한다.

제 41 조 (연금): 한인총회는 교역자 후생복지를 위해 연금제도를 실시한다. 연금제도의 운용은 교역자후생업무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개정, 세칙, 부칙

제 42 조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지역회 또는 정회원 5 인 이상의 서면 제출에 의하여 회칙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실행위원회의 발의로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 43 조 (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회칙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실행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 44 조 (부칙)

1.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C&MA 지방회 균일헌법(Uniform Constitution for Districts of the C&MA)의 보완으로 한인총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교단의 모법과 만국통상회의법을 준용한다.

주: 주: 본 회칙은 2022 년 4 월 26 일 제 39 차 총회에서 최종 수정 통과된 것으로 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총회 시행세칙

<주: 본 시행세칙은 주후 2019년 4월 23일 제 36차 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당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는 세칙임.>

본 시행 세칙은 총회 회칙 제 43조에 의거하여 회칙에 미비된 사항과 한인총회 특수 사정에 입각한 행정규정 및 회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교역자

제 1 조 (교역자 인사): 교회의 교역자 인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 1 항 (담임목사): 담임목사 인사는 C&MA 교회 헌법 제 8조에 준하여 다음 절차를 밟는다.

1. 담임목사 인사는 교회치리회(당회 혹은 목회협력위원회)와 감독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치리회가 부재할 경우 감독이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2. 담임목사의 인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회치리회는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고, 감독과 협의하여 인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감독은 담임목사 후보자를 단수 혹은 복수로 교회치리회에 제시한다.
4. 교회치리회는 감독이 제시한 담임목사 후보자 중 1인을 종다수 투표로 선정하여, 교인총회에 상정한다. 교인총회 3분의 2 이상의 인준을 받은 후보자는 담임목사로 파송된다.
5. 감독이 제시한 후보자들이 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교회는 총회 회원 자격에 하자가 없는 담임목사 후보를 감독에게 제의할 수 있으며, 위 3번 이하의 절차에 따라 파송받는다.
6. 담임목사가 사임을 원할 때에는 적어도 일개월 전 감독에게 사임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7. 담임목사가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할 때, 교회치리회와 해당 담임목사는 감독과 협의하여 담임목사의 거취를 결정한다.
8. 감독은 교회의 결정이 불가능하거나, 총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해당교역자를 임명, 해임, 혹은 전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2 항 (부목사): 교회가 부목사, 교육목사 및 기타 전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총회 회원 자격에 하자가 없는 자로, 교회치리회의 인준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반드시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항 (전도사): 교회의 전임전도사는 총회 사역자 자격에 하자가 없는 자로, 교회치리회의 인준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2 조 (사역증): 총회는 C&MA 교회사역부(NCM)의 규정에 맞추어, 매 년 총회 소속 사역자에게 사역증을 발급한다. 평신도사역자증(Christian Workers' Certificate)은 목사나 전도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교회가 추진하는 특수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제 3 조 (가입): 총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 항 (교역자): 총회가입원서, 명함판사진 2매, 교리 설문서, 서명된 신조, 대학 이상 졸업 및 성적 증명서, 이력서, 신앙간증서, 호적등본, 지역회장 또는 담임목사의 추천서, 목사안수증명서(목사일 경우).

제 2 항 (평신도사역자): 가입원서, 신앙간증서, 이력서, 담임목사 추천서

제 4 조 (목사고시 및 안수): 목사고시 및 안수를 받으려는 후보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 인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 항 (목사 고시 응시자격):

1.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수여받고, 1년 이상 사역한 자로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는 자.
2.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에서 교회 사역에 연관된 학사 학위를 수여받고, 2년 이상 사역한 자로,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는 자.
3.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사역에 연관된 석사학위(M.P.S., M.A. 등)를 수여받고 2년 이상 사역한 자로,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는 자.
4. 총회 소속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서 총회의 교역자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로 필요에 따라 실행위원회가 제시하는 추가적 과정을 마치고,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는 자.

제 2 항 (청원): 목사고시의 청원은 담임목사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총회에 청원한다. 단, 사역증을 발급받고 총회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는 해당 지역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제 3 항 (청원시기) 목사고시의 청원은 고시청원을 인준하는 정기실행위원회 개최 4 개월 전까지 총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 4 항 (목사고시) 목사고시는 고시안수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논문: 다음과 같은 주제의 논문을 고시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원의 주 그리스도, 성결의 주 그리스도, 신유의 주 그리스도, 재림의 왕 그리스도, 선교의 성서적 근거, 지교회 전도에 대한 성서적 근거, 교회론)
2. 독후감: 고시안수위원회가 지정한 책들에 대한 독후감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매년 총회에서 주관하는 정기총회 기간에 실시하며, 과목은 성경, 교단 역사와 정치, 교회사, 조직신학으로 한다.
4. 설교 실기 및 면접: 필기시험 기간 중 고시안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설교의 실기시험과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제 5 항 (고시비): 각 고시후보자는 실행위원회가 정하는 고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항 (안수): 목사고시 합격자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해당 지역회 주관으로 안수를 받는다.

제 5 조 (이명된 교역자): 타 교단에서 전입되어 오는 교역자는 본 교단의 역사와 교단정치에 관하여 총회가 정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 6 조 (연장교육):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는 총회 혹은 지역회에서 주관하는 교역자연장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역회

제 7 조 (조직): 지역회는 회칙에 규정된 특정지역에 근접한 5 개 이상의 교회로 조직한다. 새로운 지역회를 창설 혹은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총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에서 출석인원 3 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8 조 (명칭): 각 지역회는 C&MA 한인총회 _____ 지역회라 칭한다.

제 9 조 (목적): 지역회의 목적은 감독과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지역회 내 교회의 발전과 연합, 교역자의 친목을 도모하며, 총회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 10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총회 회칙 제 1 장 제 6 조에 준한다.

제 11 조 (지역회의 업무)

1. 지역회 임원 및 지역 대표 실행위원 선출.
2. 회칙 및 세칙 개정안 발의 및 안건 상정.
3. 지역 내 개척과 선교 관계 업무 및 지역회에 위임된 총회 업무 수행.
4. 회원 간의 연합과 친목 도모 및 연합 사역주관.
5. 교회 장로의 시취와 장립 주관 및 이명 장로의 교육, 지역회 내 장로 명단 관리.
6. 감독의 지시에 따라 지역회 내 교회의 치리에 협조.

제 12 조 (지역총회)

제 1 항 (구성): 지역총회는 지역 내에서 사역하는 모든 정회원 및 준회원 교역자와 각 교회 평신도 대표 1 인으로 구성한다.

제 2 항 (개회): 지역총회는 접수된 회원 및 교회대표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3 항 (정기지역총회): 정기지역총회는 매년 2 월 중에 회집한다.

제 4 항 (임시지역총회):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지역총회를 소집한다. 임시지역총회는 통보된 안건만을 심의한다.

제 13 조 (월례회): 지역회는 매 달 월례회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 간의 친목 도모 외에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한다.

제 14 조 (임원회): 지역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및 부서기와 부회계로 구성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 1 항 (지역회장): 지역회장은 지역회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매 3 개월마다

- 지역 상황을 감독에게 보고한다.
- 제 2 항 (부회장): 지역회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 항 (서기): 서기는 지역회 모든 회의록 작성하며, 문서수발 및 보관 업무를 관장한다.
- 제 4 항 (회계): 회계는 지역회의 제반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 제 5 항 (부서기 및 부회계): 필요에 따라 부서기와 부회계를 둘 수 있다.
- 제 15 조 (부서): 지역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제 1 항 (고시부): 장로 교육 및 시취 업무를 관장한다.
- 제 2 항 (선교부): 지역회 선교 및 전도 업무를 수행한다.
- 제 3 항 (교육부): 지역회 교역자수련회 및 연합사역을 수행한다.
- 제 4 항 (기타): 지역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 16 조 (감사): 지역회는 매 회기 1 인의 감사를 선출한다.
- 제 17 조 (선거): 지역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 차, 2 차 투표에서 소정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3 차 투표를 실시하여 종다수 득표로 선출한다.
- 제 1 항: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출석 회원 3 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제 2 항: 기타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 제 18 조 (임기) 임원 및 부서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19 조 (보선): 모든 임원의 보궐선거는 임원회가 관장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 20 조 (정족수): 지역회의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1 조 (회계년도): 지역회의 회계년도는 2 월 1 일부터 익년 1 월 31 일로 한다.
- 제 22 조 (재원): 지역회의 재원은 각 교회의 회비와 기부금 및 연합사역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지역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매 회기마다 세례교인 당 년 \$5 의 지역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교회

- 제 23 조 (명칭): 한인총회 소속교회는 C&MA 한인총회 _____ 교회라 칭한다.
- 제 24 조 (정교인 자격): 정교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 1 항 (중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과 중생의 확신이 있는 자.
- 제 2 항 (믿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의 축자영감을 믿는 자.
- 제 3 항 (사중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재림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
- 제 4 항 (교회사역 협조): 총회 및 소속 교회의 목적과 방침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교회 및 총회의 모든 사역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자.
- 제 5 항 (등록): 상기 1 항부터 4 항까지의 요건에 합한 자로서 세례를 받고 정교인으로 등록된 자.
- 제 6 항 (자격상실): 정당한 사유나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6 개월 이상 주일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정교인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교역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는, 교회치리회가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교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 25 조 (성례): 세례와 성만찬은 교회가 실시하는 두 가지 성례이다. 세례는 침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약례도 가하다. 성례는 안수받은 목사가 주관하며, 정기적으로 행한다.
- 제 26 조 (교인총회): 교인총회는 교회 정교인 전체가 모이는 회의이다.
- 제 1 항 (구성): 교회의 정교인으로 구성한다.
- 제 2 항 (임원): 의장과 서기는 당회 또는 목회협력위원회의 회장과 서기로 한다.
- 제 3 항 (임무): 교인총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 보고와 재정결산 보고를 받고, 차기 예산안을 채택한다.
 2. 장로, 목회협력위원 및 기타 교회의 중직을 선출한다.
 3. 당회나 목회협력위원회가 이첩한 교회의 중요 안건을 심의한다.
- 제 4 항 (소집): 교인총회는 당회 또는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로 당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은 일주일 전에 공고하고 출석회원으로 개최한다.
- 제 27 조 (치리회): 교회는 교인총회 과반수의 결의로 아래와 같은 치리회를 선택할 수 있다.

제 1 항 (당회)

1. (구성): 담임목사와 2인 이상의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2. (임원):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되며 서기와 재무는 당회에서 호선한다.
3. (임기): 당회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시무년한): 시무장로는 매 3년마다 1년 휴무한 후 정기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로 재시무할 수 있다.

제 2 항 (목회협력위원회) : 목회협력위원회는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당회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1. (구성): 담임목사와 3인 이상 7인 이하의 제직원으로 구성한다.
2. (선임): 목회협력위원은 정기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임원): 목회협력위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와 재무는 목회협력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임기): 담임목사 외 목회협력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5. (명칭): 목회협력위원회는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 3 항 (임시치리회): 개척교회,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당회나 목회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임목사가 지역회장과 협의하여 당회 및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28 조 (치리회의 기능)

1. 교회 전반의 업무에 대한 입안 및 감독
2. 재정 결산 업무와 예산안 입안
3. 교역자 및 직원의 인사
4. 장로, 권사 및 안수집사 후보의 추천
5. 교회의 모든 재산 및 문서 관리.
6. 교인의 포상 및 징계.
7. 상회와의 제반 협동 사역

제 29 조 (제직회)

제 1 항(구성): 제직회는 담임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부목사, 기타 전임목사, 담임목사 사모, 전임전도사, 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및 모든 협동 직분자로 구성하며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제 2 항 (기능): 제직회는 교인총회가 세운 예산을 교회치리회의 감독 하에 집행하며,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헌금 및 재정을 관리하고 이를 담임목사와 교회치리회에 수시로 보고한다.

제 3 항 (임원 및 부서): 제직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회계, 선교회계를 두며 기타 필요한 임원 및 부서는 교회치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0 조 (담임목사):

제 1 항 (위치): 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치리회와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

제 2 항 (업무):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운영, 즉 예배와 교육, 기타 사역, 인사 및 행정과 재정 관계 제반 업무를 교회치리회와 상의하여 지휘 감독한다. 교회의 모든 재정 업무와 행정 처리는 담임목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항 (생활비): 교회는 담임목사의 사택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4 항 (휴가 및 안식년): 교회치리회는 담임교역자의 영육 간의 재충전을 위해 매 해 2주 이상의 휴가를 배려하며, 또한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안식년, 혹은 안식월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 5 항 (유고): 담임목사의 유고시에는 교회 치리회는 즉시 총회 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역회장과 상의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는다. 감독은 유사시에 담임목사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1 조 (부목사, 교육목사, 사역목사) : 부목사, 교육목사 외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는 교회의 임시직으로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회 사역을 보좌한다.

제 32 조 (장로): 장로는 영적지도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며,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직분이다.

제 1 항 (자격): 장로는 35세 이상의 남자로서,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며, 가정이 원만하며, 그 인격이 교회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장로후보는 세례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 자라야 하며, 3년 이상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연속 봉직한 자로 한다.
- 제 2 항 (선임): 장로는 교회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피택된다.
- 제 3 항 (시취): 피택된 장로후보에 대해 담임목사는 서면으로 해당 지역회에 시취를 청원한다. 피택된 장로후보는 지역회가 주관하는 장로 시취 절차와 안수례를 받고 장로로 장립된다.
- 제 4 항 (과목): 장로시취 과목은 성경, 교단 역사와 헌법, 장로학, 면접으로 한다.
- 제 5 항 (정년): 장로는 70 세까지 시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70 세 이전의 정년은 교회의 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6 항 (협동장로):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는 정교인이 된 후, 교회치리회의 임명을 받아 협동장로로 봉사할 수 있다. 적어도 1년 이상 교회를 섬긴 협동장로는, 교회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장로가 될 수 있다. 타 교단에서 전입한 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지역회의 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
- 제 7 항 (원로장로): 은퇴한 장로 중, 10년 이상 시무장로로 근속하거나, 시무 중 교회에 끼친 공로가 인정되는 장로는, 교회치리회의 추천과 교인총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될 수 있다. 원로장로는 치리회의 초청을 받는 경우 치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33 조 (기타 직분):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과 같이 직분자를 세울 수 있다.
- 제 1 항 (권사):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영적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담임목사를 도와 심방, 구제 및 낙심자를 위로하고 권면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향존직이다. 권사는 40세 이상의 신실한 여자로서 3년 이상 교회의 제직으로 봉사한 후, 교회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선출된 후 교회가 정하는 교육과 시취 및 임직 절차를 거쳐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
- 제 2 항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교회를 섬기며, 전도와 구제에 힘쓰고, 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향존직이다. 안수집사는 3년 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한 신실한 남자로서, 교회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선출된 후 교회가 정하는 교육과 시취 및 임직 절차를 거쳐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는다.
- 제 3 항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제직회원으로 교회를 섬기며, 전도와 구제에 힘쓰고, 치리회의 지시를 받아 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서리집사는 성실한 정교인 중 담임목사가 교회치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소정의 교육을 받고 직분을 받는다.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재임명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 항 (협동직분): 타 교회에서 전입한 직분자에 대하여 담임목사가 선별하여 교회치리회의 동의를 얻은 후 협동직분에 임명할 수 있다. 이명한 직분자는 적어도 1년 이상 교회를 섬긴 후에, 교회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할 수 있다. 타교단에서 받은 남자 권사직은 안수집사직과 동등한 직분으로 인정한다.
- 제 34 조 (교회조직절차): 교회 정교인이 20인 이상 되었을 때, 감독은 교회치리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교회를 조직한다.
- 제 1 항 (광고): 적어도 조직 2주 전에 교회 조직의 목적, 절차 및 일시와 장소를 회중에게 알린다.
- 제 2 항 (회원명부): 담임교역자는 20명 이상의 정교인 명단을 감독에게 제출한다.
- 제 3 항 (서약): 감독이 의장이 되어 교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약을 받는다.
1. C&MA의 신조와 정신에 따라 복음사역에 정진하며, 교단 헌법과 총회 회칙 및 세칙, 감독의 치리에 순종한다.
 2. 매년 한인총회에 대의원을 파송하고, 교단 General Council 에 힘껏 참석한다.
 3. 총회 선교국과 협의하여 매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선교에 헌신을 재다짐한다.
 4. 세계선교를 위한 교단의 선교사역과 대사명기금(Great Commission Fund)에 최선을 다해 동참한다.
 5. 한인총회의 운영을 분담하며, 지정된 상회비와 개척선교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6. 한인총회에서 정한 교역자 은퇴연금에 동참한다.
 7. 총회 차원의 연합사역에 힘껏 동참한다.
- 제 35 조 (교회재건절차): 교단모법의 E17(조직교회에서 미조직교회로의 변경에 대한 정책)에 따라 교회의 자격을 변경한다.
- 제 36 조 (교회폐쇄절차): 교단모법의 E18(교회 폐쇄에 대한 정책)에 따라 교회를 폐쇄한다.
- 제 37 조 (선교대회): 교회는 매년 총회 선교국과 협의하여 선교대회를 실시하여 선교정신을 고취하고,

선교헌금을 약정한다.

제 38 조 (선교주일): 교회는 매년 교단본부가 정하는 선교주일에 특별선교헌금을 하여 대사명기금으로 보낸다.

제 39 조 (연례보고) 교회는 매년말 교회의 교세와 재정을 교단과 한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상회비와 개척선교비) 회계는 총회 회칙에 지정된 상회비와 개척선교비를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한다.

제 41 조 (문서 관리) 교회는 법적 명료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문서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당회(운영위원회) 회의록
2. 교인총회 회의록
3. 제직회 회의록
4. 재정관계 문서
5. 재산명세서
6. 교적부 및 정교인 명부
7. 후보철
8. 혼인 및 예식 기록부

제 42 조 (교회의 재산)

1. 교회의 부동산을 매입, 저당, 담보할 경우에, 교회치리회는 반드시 사전에 총회 감독과 상의하여야 한다.
2. 교회의 부동산을 매각, 양도, 교환할 경우에, 교회치리회는 반드시 사전에 총회 감독과 상의하여야 하며,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재산귀속) 교회가 해체되거나,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 없이 총회를 무단 탈퇴하였을 경우, 교회의 재산은 총회 실행위원회가 관리한다. 재산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단 지교회 균일헌법 제 16 조에 따른다.

제 44 조 (부칙)

1. 본 세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지 교회는 본 시행세칙과 상충되지 않는 내규를 둘 수 있다.
3. 본 세칙은 C&MA 지방회 균일헌법(Uniform Constitution for Districts of the C&MA)의 보완으로 한인총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교단의 모법과 만국통상회의법을 준용한다.

주: 본 시행세칙은 주후 2019년 4월 23일 제 36차 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당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는 세칙임.